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사위원회 채용 공고 제 2025-007호

**2025년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원 공개 채용공고**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사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 직원 공개 채용 공고를 합니다.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함께 일할 ‘청소년
전문직’ 청소년 상담사를 모집합니다.

아동·청소년의 밝은 미래와 꿈을 함께 만들어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2일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사위원회

I . 채용분야

채용기관	업무내용	채용요건
홍천군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 학교밖지원센터 팀장	<p>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p> <p>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p> <p>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p> <p>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p> <p>* III.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라. 참고</p>

II . 근무조건

가. 신분 : 홍천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계약직(상근) 직원
나. 보수 : 홍천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규정 기준
다. 후생복지 : 4대 보험, 퇴직연금 가입
라. 근무기간 : 2025년 5월 1일~
(화~토요일 주 40시간 근무)
수습기간: 3개월, 계약 연장 가능

III .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라. 학교밖지원센터 팀장 자격 및 상세 경력기준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 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 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IV.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심사 2025년 4월 중 (1차 전형 통과자 개별 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5년 4월 중 (기관사정으로 변경할 수 있음)

라. 근로계약일 : 2025년 5월 1일 (개별통보/ 계약체결일 변경가능)

V.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일 : 2025. 4. 2(수) ~ 2025. 4. 23(수)

나. 접수기간 : 2025. 4. 2(수) ~ 2025. 4. 23(수) *12시(자정)까지 서류 접수

다.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원칙

라. 이메일주소: hcyc1386@hanmail.net

※ 지원 및 자격문의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33-433-1386, 070-4147-5548

/ 담당: 민동연 행정원

VI.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불임1】 참조
- 나.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불임2】 참조
- 다. 최종학력 증명서 1부(면접 시 제출)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
- 라.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현 기관 입사이전)(면접 시 제출)
- 마. 자격증 사본 1부(면접 시 제출)
(해당자에 한함/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국가자격)
- 바.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사.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면접 시 제출)

VII.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나. 서류 내용이 허위 기재로 밝혀질 경우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 면접 후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라. 채용서류 반환 고지관련 내용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5년 7월 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멀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033-435-1388)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

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3) 우리 기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5년 7월 1일까지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 서류 일체는 파기할 예정입니다.